



企業經營과税金講話 4

企業經營의 合理와 效能을 爲해 알
기 쉽게 위어 가는 税金特講을 連
載한다

租稅負擔의 限界는 어디가?
所得課稅란 무엇인가?
非課稅와 綜合所得이란?



李 文 宰
韓國稅務會計研究會會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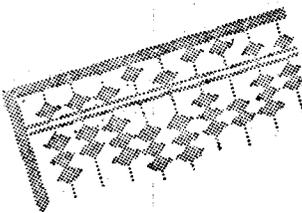
第 4 講 所得稅라는 税金

V. 其他所得

其他所得은 다음과 같은 一時的인 所得으로써 稅率은 比例稅率 곧 一律的으로 16.5%이며 支給者가 源泉徵收을 하여 納付하게 되어 있다.

① 租稅犯処罰節次法, 關稅法, 煙草專賣法, 紅草專賣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支給하는 賞與金, 賞金, 報勞金 또는 報償金(辨償을 위한것을 除外한다)

- ② 勝馬投票券의 購買者에게 支給하는 配當金
- ③ 懸賞에 대한 賞金
- ④ 著作權 特許權 漁業權 또는 營業權의 使用料
- ⑤ 講演料 기타 謝禮金
- ⑥ 校正 翻譯 考證 速記 筆耕 打字 또는 音盤吹込의 對價로 받는 料金
- ⑦ 福券 또는 景品券에 의하여 받는 當錢金品



貯蓄奨励를 목적으로 하는 金融機關이支給하는것을 除外한다)

- ⑧ 解約으로 인하여 받는 違約金 또는 賠償金
- ⑨ 金錢貸借의 幹施手數
- ⑩ 푸레미엄所得

1. 具體的인 所得範圍

現行 所得稅法上의 其他所得의 課稅所得은 위에서 알아 보았듯이 繼續的인 것이 아니고 一時的인 所得임을 알수 있으나 그 列擧된 所得의 具體的인 범위를 좀더 알아 보기로 한다.

① 첫째번의 것은 租稅犯處罰節法이나 기타 法律이 그 提報者에게 一定한 賞金등을支給하게 되어 있는데 이경우의 賞金등을 말한다.

② 둘째번의 것은 競馬에 있어서 勝馬券의 所指者가 받는 配當金을 말한다.

③ 懸賞에 대한 賞金은 各種 懸賞에 대한 當選者가 받는 賞金을 말하는데 懸賞퀴즈나 賞金附 尋犬 廣告등을 볼때마다 其他所得에 대한 所得稅를 연상케 할 것이다.

④ 著作權등의 使用料를 받는 것도 其他所得에 該當하는데 營業權에는 商標權, 營業票의 使用料도 包含한다. 그리고 著作權의 使用料에는 繪畫, 彫刻, 工藝, 建築, 地圖, 圖型, 模型과 寫眞, 樂曲, 樂譜, 演奏, 歌唱, 舞譜, 脚本, 演出, 音盤, 錄音, 필름, 기타 學術 등의 著作物에 대한 著作權을 他人에게 使用하게 함으로써 그 對價로 받는 報酬나 印稅 등을 包含한다.

⑤ 講演料와 其他謝禮金에는 放送 테레비존 등을 通하여 解說, 啓蒙 또는 演技를 行하는 者와 演技의 審査員등에게支給하는 謝禮金, 賞金 기타 이와 類似的인 性質의 報酬등을 包含한다. 다만 事業所得中 自由職業所得에 該當하는 것은 事業所得임으로 其他所得에 該當하지 아니한다. 例컨데 俳優나 歌手의 出演料는 其他所得에 該當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⑥ 여섯번째의 內容中 音盤收入의 對價에는 自由職業所得者인 歌手등이 받는 것은 除外한다. 그것은 事業所得이기 때문이다.

⑦ 福券이나 景品券의 當籤金品은 우리 주변에서 비교적 많이 있는 것을 본다.

住宅福券의 當籤, 商品 賣出에 따른 景品券의 當籤金品등이 모두 이에 該當한다. 언젠가 紙上에서 住宅福券의 1等當籤者가 4百萬元에 가까운 稅金을 물게 되어 實所得은 不過 百萬元남짓했다는 이

야기가 있었는데 그 경우는 其他所得稅는 16.5%로서 80余萬원이었지만은 綜合所得稅의 對象이 되어 綜合所得稅까지 得稅되었기 때문이다.

⑧ 解約으로 인하여 받는 違約金 또는 賠償金은 財産權에 관한 契約의 解約으로 인하여 받는 損害賠償으로서 그 名目 如何에 不拘하고 本來의 契約의 內容이 되는 支給自体에 대한 損害를 넘는 損害에 대하여 賠償하는 金錢 또는 기타 物品의 價額으로 한다.

⑨ 金錢貸借의 幹施手數料란 한마디로 말하여 부리커의 콘밋손을 말한다.

⑩ 푸레미엄 所得은 輸出 軍納 用役 觀光 기타의 事業을 營爲하는 者, 곧 外貨獲得 所得者 以外の 者가 取得한 輸入할 수 있는 權利의 讓渡金과 會員券의 讓渡差益을 말한다.

2. 非課稅

其他所得에 있어서도 다른 所得과 마찬가지로 政策上 또는 施行上 困難하다고 認定되는 部分에 대해서는 非課稅로 하고 있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① 文芸 學術 美術 音樂 또는 寫眞에 속하는 創作品에 대한 懸賞金

② 反共法의 규정에 의하여支給하는 賞金 또는 報勞金

3. 源泉徵收

위에서도 말한바 있지만은 其他所得은 一般源泉徵收 곧 그 所得金額을支給하는 者는 누구이든 源泉徵收를 할 義務가 있다. 따라서 이들 其他所得에 該當하는 所得金額을支給할 경우에는 그金額의 나과에 불구하고 16.5%를 곱하여 源泉徵收를 하고 翌月10日까지 所管稅務署에 納付하여야 한다.

VI. 綜合所得

지금까지 不動產所得, 配當利子所得, 事業所得, 勤勞所得, 其他所得등 5가지의 分類所得에 대하여 대충 알아 보았거니와 이들 所得의 年間合計額이 500萬원 以上이 되는 者는 綜合所得稅를 納稅할 義務가 있다. 現在 政府가 提出하여 國會의 審議를 기다리고 있는 稅制改革案에 따르면 來年부터는 年間所得合計額이 300萬원 以上인者로 得稅對象 範圍를 擴大하고 있어 一般의 關心을 모으고 있기도 하다.

1. 所得綜合対象者

綜合所得稅에서 먼저 알아 둘 것은 分類得稅所得金額이 다음과 같을 때 綜合所得의 対象者가 된다는 점이다.

1. 不動產所得金額이 年間 150만원 以上인 者
2. 配當利子所得金額이 年間 150만원 以上인 者
3. 事業所得이 年間 300만원 以上인 者
4. 勤勞所得이 年間 240만원 以上인 者
5. 其他所得이 年間 100만원 以上인 者

다시 말해서 各分類所得이 위 対象金額 以上이면 서 그들 所得金額을 年間 合計하여 500만원 以上이 될 때 綜合所得稅를 納付할 義務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年間 所得金額의 合計額이 500만원 以上 일지라도 個別的인 分類所得金額이 위 対象金額에 未達할 때에는 納稅義務가 없다.

〈例〉

A의 경우

不動產所得金額	140만원
配當利子所得金額	140만원
事業所得金額	299만원
勤勞所得金額	0
其他所得金額	99만원
	計 678만원

B의 경우

不動產所得金額	100만원
事業所得金額	320만원
其他所得金額	90만원
	計 510만원

例示한 A는 B보다 所得金額이 많다. 그런데도 A는 綜合所得稅의 納稅義務가 없으며 B는 納稅義務가 있다.

그 까닭은 A의 경우는 各分類課稅所得金額이 対象金額에 未達하고 있으나 B의 경우는 事業所得金額이 対象金額 以上이고 그 合計額이 500만원을 넘었기 때문이다.

改正案에는 年間合計額이 300만원으로 引下되는 同時 對象金額도 다음과같이 달라지고 있음을 參考삼아 添言한다.

- ① 不動產所得 100만원
- ② 配當利子所得 100만원
- ③ 事業所得 200만원
- ④ 勤勞所得 180만원
- ⑤ 其他所得 60만원

2. 綜合所得의 計算과 稅率

綜合所得은 年間分이므로 每年 1月1일부터 12月31日까지의 分類得稅所得金額을 總合算하는바 事業所得中 山林所得, 勤勞所得中 年金 또는 退職給與, 所得稅法上的 非課稅所得과 免除所得에 該當하는 部分은 合算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稅率은 다음과 같다.

20만원 以下の 金額	16.5%
20만원 초과하는 金額	22%
50만원 " "	33%
120만원 " "	40%
300만원 " "	50%
500만원 " "	60.5%

〈註〉改正案의 稅率은 다음과 같다.

300만원 以下	30%
300만원 초과	50%
600만원 " "	55%
1,500만원 " "	60%
4,500만원 " "	65%

이밖에 行政罰的인 加算稅가 따로 있는데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 ① 期間經過後 申告 또는 無申告한 경우 50%
- ② 過少申告한 경우 過少申告金額에 대한 稅金의 10%
- ③ 期限内 無納付 10%

3. 稅額의 計算

綜合所得稅의 稅額은 綜合所得金額에 稅率을 適用하여 算出한 稅額에서 이미 納付한 分類課稅所得稅額을 控除한 것이 된다.

그런데 이 稅額計算에서 꼭 알아 둘 것은 配當所得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實際配當이든 紙上配當이든 간에 配當所得을 받은 法人別로 配當所得種類에 대하여 法人稅를 計算하여 그 半額을 公제하게 되어 있다. 例를들어 甲氏는 A會社로 부터 實際配當 100만원 B會社로 부터는 紙上配當 100만원이 있었다고 한다면

$$A. (100 \text{ 萬元} \times 27.5\%) \times \frac{1}{2} = 137,500 \text{ 元}$$

$$B. (100 \text{ 萬元} \times 27.5\%) \times \frac{1}{2} = 137,500 \text{ 元}$$

都合 27萬5千원을 綜合所得算出稅額에서 公제한 다는 것이다.

綜合所得稅의 稅額計算은 實例를 들어 다음에 參考로 揭示한다.

〈例〉

1970. 1. 1 부터 1970. 12. 31 까지 K氏의 所得内容은 다음과 같다.

① 不動産所得

第1期 600,000 원

第2期 800,000 원

② 甲種配当利子所得

A会社 300,000 원

B会社 500,000 원

C会社 (紙上配当) 200,000 원

③ 丙種配当利子所得

年間 200,000 원

④ 事業所得

第1期 1,500,000 원

第2期 2,000,000 원

⑤ 勤勞所得

月 100,000 원

年間 1,200,000 원

※總計 7,300,000 원

먼저 이들 分類所得에 대한 分類得稅稅額을 計算한다.

① 不動産得稅 (418,000 원)

第1期分 $100,000 \times 16.5\% = 16,500$

$150,000 \times 22\% = 33,000$

$350,000 \times 33\% = 115,500$

計 165,000

第2期分 $100,000 \times 16.5\% = 16,500$

$150,000 \times 22\% = 33,000$

$350,000 \times 33\% = 115,500$

$200,000 \times 44\% = 88,000$

計 253,000

② 甲種配当所得稅 (143,000 원)

A会社 $300,000 \times 16.5\% = 49,500$

B会社 $500,000 \times \quad = 82,500$

C会社 $200,000 \times 5.5\% = 11,000$

③ 丙種配当所得稅 (33,000 원)

$200,000 \times 16.5\% = 33,000$

④ 事業所得稅 (1,397,000 원)

第1期分 $100,000 \times 16.5\% = 16,500$

$150,000 \times 22\% = 33,000$

$350,000 \times 33\% = 115,500$

$900,000 \times 44\% = 396,000$

計 561,000

第2期分 $100,000 \times 16.5\% = 16,500$

$150,000 \times 22\% = 33,000$

$350,000 \times 33\% = 115,500$

$900,000 \times 44\% = 396,000$

$500,000 \times 55\% = 275,000$

計 836,000

⑤ 勤勞所得稅 (179,520 원)

$10,000 \times 7.7\% = 770$

$10,000 \times 9.9\% = 990$

$10,000 \times 12.1\% = 1,210$

$30,000 \times 15.4\% = 4,620$

$20,000 \times 22\% = 4,400$

$10,000 \times 29.7\% = 2,970$

計 14,960

$14,960 \times 12月 = 179,520$

※分類得稅 稅額總計 2,170,520 원

다음으로 綜合得稅 算出稅額을 計算한다면 다음과 같다.

$200,000 \times 16.5\% = 33,000$

$300,000 \times 22\% = 66,000$

$700,000 \times 33\% = 231,000$

$1,800,000 \times 44\% = 792,000$

$2,000,000 \times 55\% = 1,100,000$

$2,300,000 \times 60.6\% = 1,391,500$

計 3,613,500

그리고 위算出稅額에서 控除하여야 할 甲種配当 所得의 法人稅 相當額의 50%를 計算하면 다음과 같다.

A会社分 $300,000 \times 27.5\% = 82,500$

B会社分 $500,000 \times 27.5\% = 137,500$

C会社分 $200,000 \times 27.5\% = 55,000$

計 275,000

$275,000 \times 50\% = 137,500$

따라서 納付하여야 할 綜合所得稅額은 다음과 같다.

3,613,500

分類得稅額合計 $\Delta 2,170,520$

甲配의 法人稅相當額 $\Delta 137,500$

1,305,480 원

4. 申告와 納付

綜合所得稅는 그 納稅義務者가 되었을 경우 1年分の 綜合所得分類을 翌年 5月末日까지 住所地 所管稅務署에 申告하고 그 稅額 또한 이날까지 自進納付하여야 한다.